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가합511851 판결 [보증금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2017나203933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가합511851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한화건설

시흥시 대은로 81 (대야동, 모비딕빌딩)

대표이사 최광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한철웅

피 고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빌딩)

대표자 이사장 이원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앤원 담당변호사 곽상기, 하재민

변론 종결 2017. 5. 24.

판결 선고 2017. 6.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934,389원과 그 중 85,400,000원에 대하여 2012. 9.

- 15.부터, 215,790,297원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39,681,092원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160,063,000원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각 2017. 6. 1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18,415,468원과 그 중 85,400,000원에 대하여 2012. 8. 4.부터, 223,238,221원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40,063,165원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 및 160,063,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 건설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문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공제조합으로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공제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와이엠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청라 7블록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0. 7. 14. 백삼토건 주식회사(이하 '백삼토건'이라 한다)와 위 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27억 4,780만 원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1. 24.에는 선금금 274,78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백삼토건은 2010. 7. 14. 피고와 보증기간 2010. 7. 14.부터 2012. 3. 31.까지, 보증금액

274,780,000원인 계약이행 보증계약과, 보증기간 2010. 11. 25.부터 2012. 3. 31.까지, 보증금액 274,780,000원인 선급금반환 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앞으로 2010. 7. 23.

백삼토건의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계약 보증서를, 2010. 11. 25. 백삼토건의 선급금반환을 보증하는 선급금 보증서를 각 발급하였다.

원고는 백삼토건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자 2011. 9. 9. 백삼토건에 하도급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A회사로부터 B지구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도급받은 후 2011. 9. 1. 목원건설 주식회사(이하 '목원건설'이라 한다)와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2-2공구)에대하여 공사대금 85억 10,556,000원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목원건설은 2011. 9. 1. 피고와 보증기간 2011. 9. 1.부터 2013. 3. 31.까지, 보증금액 851,055,600원인 계약이행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1. 9. 7. 원고 앞으로 목원건설의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계약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목원건설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자 원고가 2012. 5. 2. 조속한 공사 시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목원건설은 2012. 5. 3.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다.

라.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로부터 송파위례 A1-11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를 도급받은 후 2012. 4. 18. 주식회사 동튼건설(이하 '동튼건설'이라 한다)과 위 공사 중 습식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24억 504,000원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선급금 252,052,92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동튼건설은 2012. 4. 18. 피고와 보증기간 2012. 4. 18.부터 2013. 9. 17.까지, 보증금액 240,050,400원인 계약이행 보증계약과 보증기간 2012. 4. 19.부터 2013. 9. 17.까지, 보증금액 252,052,920원인 선급금반환 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4.19. 원고 앞으로 동튼건설의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계약 보증서와 선급금반환을 보증하는 선급금 보증서를 각 발급하였다.

원고는 동튼건설이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자 2012. 6. 20.과2012. 6. 26. 두 차례에 걸쳐 공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그럼에도 동튼건설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자 2012. 6.

29.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백삼토건과 관련하여 2012. 7. 12. 피고에게 계약이행 보증금 274,780,000원과 선급금반환 보증금 85,4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11. 24. 원고에게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274,78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목원건설과 관련하여 2012. 7. 13. 피고에게 계약이행 보증금 851,055,6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11. 24. 원고에게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851,055,600원 지급하였다.

원고는 동튼건설과 관련하여 2013. 11. 14. 피고에게 계약이행 보증금 79,987,400원, 선급금반환 보증금 252,052,92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12. 11. 원고에게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79,987,400원, 선급금반환 보증금으로 252,052,9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제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백삼토건, 목원건설, 동튼건설 사이의 각 하도급계약이 백삼토건, 목원건설, 동튼건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백삼토건과 관련하여 계약이행 보증금 274,780,000원과 선급금반환 보증금 85,400,000원(지급된 선급금 249,800,000원 중 164,400,000원은 기성금에 정산됨)을 보증금 청구일인 2012. 7. 12.부터 22일(청구서의 우편송달에 필요한 기간 3일 + 보증금 심사에 필요한 기간 14일 + 보증약관상 지급기한 5일, 이하 같다) 이내인 2012. 8. 3.까지, 목원건설과 관련하여 계약이행 보증금 851,055,600원을 보증금 청구일인 2012. 7. 13.부터 22일이내인 2012. 8. 4.까지, 동튼건설과 관련하여 계약이행 보증금 240,050,400원(원고는 당초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실손해인 79,987,400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하도급계약서상 손해배상예정액인 계약금액의 10%의 한도 내에서 보증금액 전액을 구하고 있다)과 선급금반환 보증금 252,052,920원을 보증금 청구일인 2013. 11. 14.부터 22일 이내인 2013. 12. 6.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보증금의 지급을 상당히 지체하다가 일부의 보증금만을 지급하였는바, 피고가 지급한 일부 보증금을 원고의 각 보증금 청구일로부터 22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순차 총당하면 피고가 지급할 보증금은 518,415,468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미지급 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백삼토건에 미지급한 기성금이 있어 이를 선급금에서 공제하면 백삼토건이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백삼토건 관련 선급금반환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는 동튼건설의 원고에 대한 계약이행을 보증한 것일 뿐이고 손해배상예정액의 지급까지 보증한 것이 아니며, 하도급계약서상 계약보증금을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동튼건설에 지급하여야 할 계약이행 보증금은 240,050,400원이 아니라 당초 원고가 청구한 79,987,400원인데 피고는 이를 모두지급하였다.

피고가 보증금 지급 청구를 받고 바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원고가 보증금 지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적기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피고에게 지급 지연에 따른 지체책임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한 각 보증금은 모두 원금에 총당되어 소멸하였고 미지급 보증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의 보증금채무의 범위

원고와 백삼토건, 목원건설, 동튼건설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백삼토건, 목원건설, 동튼건설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어 피고의 보증약관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 백삼토건, 목원건설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손해가 피고의 각 계약이행 보증금액을 초과한 사실, 원고가 동튼건설에 선급금 252,052,92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동튼건설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하도급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본 바와 같은바, 아래에서는 원 · 피고 사이에 보증금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백삼토건 관련 선급금반환 보증금과 동튼건설 관련 계약이행 보증금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16, 22, 23,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백삼토건에 지급하거나, 백삼토건의 하수급업체들에 게 직접 지급하거나, 압류 및 가압류 금액을 공탁하거나, 선급금에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원고와 백삼토건 사이의 하도급계약 해제 당시까지 발생한 기성금 전액이 지급되었고, 기성금을 정산하고 남은 선급금은 85,400,000원인 사실, 원고는 백삼토건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을 기성금의 기준으로 삼은 사실, 원고와 동튼건설 사이의 하도급계약서 중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9조에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백삼토건 관련 선급금반환 보증금으로 85,400,000원, 동튼건설 관련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보증금액의 한도 내로서 계약금액의 10%인 240,050,400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백삼토건에 대한 기성금의 지급을 위해 집행공탁한 공탁금 중 집행비용은 기성금을 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은 기성금에 대한 미변제액으로 보아백삼토건이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백삼토건과 체결한 선급금반환 보증계약은 백삼토건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미지급 기성금에 충당되고 남은 미정산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백삼토건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인데, 공탁에 따른 집행비용은 백삼토건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금액이어서 백삼토건이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동튼건설의 원고에 대한 계약이행을 보증한 것일 뿐이고 손해배상예정액의 지급까지 보증한 것이 아니며, 하도급계약서상 계약보증금을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동튼건설이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약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이며(민법 제398조 제4항), 피고의 보증약관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이행 보증계약은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주계약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동튼건설 관련

계약이행 보증금액 240,050,400원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손해배상예정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 채무액 원금은, 백삼토건 관련 보증금 360,180,000원(= 274,780,000원 + 85,400,000원), 목원건설 관련 보증금 851,055,600원, 동튼건설 관련 보증금 492,103,320원(= 240,050,400원 + 252,052,920원)이었다.

나.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

1) 갑 제5호증의 2, 제6호증의 2, 제7호증의 2, 제8호증의 2, 제9호증의 2, 제23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보증약관 제4조는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바로 피고에게 알리고 보증금 청구시 1보증금청구문서와 함께 보증서 또는 보증서 사본, 2 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주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관계 서류, 4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 등 피고가 요청하는 서류(계약이행 보증금의 경우), 5 선급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선급금반환 보증금의 경우), 6 미정산 선급금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선급금반환 보증금의 경우)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피고는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사고와 관련된 필요한 심사를 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5조는 '피고는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고 심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증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보증금액은 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2. 7. 12. 백삼토건 관련 보증금을 청구하면서 보증금청구서, 보증서와 함께 계약 해제 통보 공문, 하도급계약서와 내역서, 후속공사 계약서와 내역서, 계약내역 비교표, 기성지급 현황과 외주기성고계산서, 선급금 및 기성지급 세금계산서와 지급증빙, 직불동의서와 영수증등을 첨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2. 7. 19. 원고에게,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변경내역, 채권가압류결정문 사본, 현장설명자료 등 보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원고가 2012. 8. 14. 채권가압류결정문 사본, 현장설명자료 등을 보완서류로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12. 7. 13. 목원건설 관련 보증금을 청구하면서 보증금청구서, 보증서와 함께 계약 해제 통보 공문, 하도급계약서와 내역서, 후속공사 계약서와 내역서, 계약내역 비교표, 기성지급 현황과 외주기성고계산서, 기성지급 세금계산서와

지급증빙, 직불동의 서와 영수증 등을 첨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2. 7. 19. 원고에게,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역, 현장설명자료 등 보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2. 8. 14. 현장설명서를 보완서류로 제출한 사실, 또한 원고는 2013. 11. 14. 동튼건설 관련보증금을 청구하면서 보증금청구서, 보증서와 함께 공사타절 공문, 하도급계약서와 내역서, 공사 타절 내역서, 후속업체 계약서와 내역서, 선급금 지급 세금계산서와 지급증빙 등을 첨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3. 11. 20. 원고에게, 발주처로부터 원고가 수령한 선급금 관련 자료, 동튼건설에 지급한 선급금 관련 자료, 기성금 관련 자료등의 보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2015. 4. 20.에야 피고가 요구한 서류 중발주처로부터 원고가 수령한 선급금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백삼토건, 목원건설 관련 보증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백삼토건, 목원건설 관련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2. 8. 14.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보증약관에 따라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증금액을 결정하고 원고에게 결정된 보증금을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했는바, 피고는 원고가 보완서류를 제출한 2012. 8. 14.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보증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보증사고와 관련한 조사기간, 보증금액 결정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보증금 지급을 청구받고 보완서류를 제출받은 후 보증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은 1개월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2012. 8. 14.부터 1개월이 지난 2012. 9. 15.부터 백삼토건, 목원건설 관련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원고는 보증금 청구일부터 22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피고가 지체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백삼토건, 목원건설과 관련하여 보완서류를 요청하고 원고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통상의 보증금 지급 절차에서 소요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보완서류에도 불구하고 기성고 산정의 근거가 부족하여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에게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당초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첨부하였거나 보완서류로 제출한 서류들에 백삼토건, 목원건설이 직접 발행한 기성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있는 등 기성고 산정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가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원도급계약서 등이 모두 제출된다고 하여 보증금 산정 근거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2015. 7. 3. 원고에게 '보증금 청구와 관련하여 지점에서 본사로 업무이관 등 조합 내부 사정으로 보증금 지급이 지연된 부분에 대하여 양해를 바라고, 조속한 심사와 원만한 협의로 당월 중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기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동튼건설 관련 보증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동튼건설 관련 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후 피고가 보완서류의 제출을 요구함에도 2015. 4. 20.에야 일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동튼건설의 경우 공사에 착수하지도 않아 하도급계약이 해제로 전부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기성금을 산정할 자료가 필요하지 않은 점, 원고가 당초 보증금 지급 청구를 하면서 공사타절 공문, 하도급계약서와 내역서, 공사 타절 내역서, 후속업체 계약서와 내역서, 선급금 지급 세금계산서와 지급증빙을 제출하였는바, 원고는 보증약관에서 정한 보증금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다고 보이는 점, 원고와 동튼건설 사이에 앞서본 바와 같이 계약금액의 10%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여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다른 자료가 필요해 보이지 않는 점, 피고가 추가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는 이미 제출되었거나(동튼건설에 지급한 선급금 관련 자료), 보증금 심사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발주처로부터 원고가 수령한 선급금 관련 자료, 기성금 관련 자료 등) 등을 종합하여 볼때, 피고는 원고로부터 동튼건설 관련 보증금 청구를 받은 2013. 11. 14.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했다고 보이므로, 2013. 12. 15.부터 동튼건설 관련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변제충당 후 잔여 보증금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24. 백삼토건 관련 보증금 274,780,000원, 2015. 11.24. 목원건설 관련 보증금 851,055,600원, 2015. 12. 11. 동튼건설 관련 보증금 332,040,32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지급한 위 각 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 후

원금에 순차 충당되었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잔여 보증금은 다음과 같다.

업체	기산일	지급일	보증금원금	총당 지연손해금	잔여 보증금
백삼토건	2012. 9. 15.	2015. 11. 24.	274,780,000원	52,667,421원 ¹⁾	52,667,421원
			85,400,000원	별도 청구	85,400,000원
목원건설	2012. 9. 15.	2015. 11. 24.	851,055,600원	163,122,876원 ²⁾	163,122,876원
동튼건설	2013. 12. 15.	2015. 12. 11.	332,040,320원 ³⁾	39,681,092원 ⁴⁾	39,681,092원
			160,063,000원 ⁵⁾	별도 청구	160,063,000원
합계					500,934,389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934,389원과 그 중 85,400,000원에 대하여 앞서 본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2. 9. 15.부터, 215,790,297원(= 52,667,421원 + 163,122,876원)에 대하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1. 25.부터, 39,681,092원에 대하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2. 12.부터, 160,063,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1. 4.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부상준, 판사 손혜정, 판사 강명중

1) 274,780,000원 × 1166/365 × 상법이 정한 연 6%

원고는 선급금반환 보증금 85,4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총당을 주장하지 않고 별도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851,055,600\text{원} \times 1166/365 \times \text{상법이 정한 연 } 6\%$

3) 청구취지 변경 전 청구하였던 79,987,400원 + 252,052,920원

4) $332,040,320\text{원} \times 727/365 \times \text{상법이 정한 연 } 6\%$

5)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이 부분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청구함.